

공 시 송 달 공 고

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부안군수
2. 사업의명칭 : 진서면 청사 건립사업
3. 공고사유 :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
4. 공고기간 : 2024년 6월 19일 ~ 2024년 7월 6일(15일 이상)
5. 협의기간 및 장소
 - 기간 : 2024. 6. 19. ~ 2024. 7. 6.
 - 장소 :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(부안군청 재무과)
(T: 063-580-4218, F: 063-580-4257)
6. 보상시기·방법 및 절차 :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,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.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, 지상권 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가 망자인 경우 상속등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.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 - 인감증명서(일반용) 1통
 -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) 1통
 - 인감도장, 신분증 지참, 본인명의 통장 사본
8. 토지 등의 표시 : 붙임 내역 참고

2024. 6. 19.

부 안 군 수



[붙임]

[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]

수용할 토지의 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
소재지 (부안군)	지 번	지 목	지적(㎡)	지분	성 명	주 소	성 명	권리의 종 류
진서면 곰소리	651	대	12	54 / 279	이*순	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4	신*부	이*순의 자
	652-1	도로	164	4 / 168	은*숙	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82	-	-
	662-1	도로	55	1	이*순	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1214	신*부	이*순의 자